

### Ⅲ. 기 타 사 례

#### **방송 예정 프로그램이 위법하지 않다는 피신청인의 소명이 부족하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5. 10.자 결정 (2003카합1156)

####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2003년 5월 10일 결핵환자 보호시설과 ○○○○교회를 운영하는 이○○ 씨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프로그램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영예정인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신청인은 그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권에 기하여 방송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SBS-TV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인에 관한 결핵환자 자활촌 건립 땅 매입의혹, 복지타운 건립 관련 주민폭행, 성폭행, 사랑의 리퀘스트 후원금 유용의혹, 차명계좌를 통한 후원금 유용의혹 등을 고발하는 내용을 방송하려고 하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3카합1156 방송금지가처분

신 청 인 : 이 ○ ○

소송대리인 강 지 원, 박 민 재, 장 현 우, 이 성 환, 배 민 경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대표이사 송도균, 윤세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최승수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방송, 방영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인도, 임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위 보관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리나 부정의혹(복지타운 건립 관련 주민폭행, 자활촌건립 땅 매입의혹, 사랑의 리퀘스트 후원금 유용의혹, 차명계좌를 통한 후원금 유용의혹 등)을 고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위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 신청인의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신청인은 그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권에 기하여 주문 기재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현  
판사 정 재 우  
판사 송 찬 호

## 목 록

신청인이 운영하는 결핵환자 보호시설과 ○○○○ 교회에 대한 취재내용(결핵환자 자활촌 건립 땅 매입의혹, ○○○○○○ 재단과 ○○○○ 교회와의 관계, 법인출연금 차액, 주민폭행, 성폭행, 김상길 맞고소 및 사문서 위조, 차명계좌, 사랑의 리퀘스트 후원금 의혹 등)이 담긴 필름. 끝

## 채무자가 게재한 기사에 위법성이 없으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소명이 부족하다

서울지방법원 2004. 1. 14.자 결정 (2004카단30911)

###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57단독(판사 이정훈)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 감사팀장인 김○○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사회부기자 전○○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게재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대통령과 관계되어 있는 불법 자금에 대한 것으로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 관계에 근거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기사 게재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중앙일보는 2003년 12월 22일자 제1면 「노 대통령 고교후배 대선 후 수십억 거둬」, 제5면 「대선 때 못준 기업이 축하금 준 듯」 등의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은행 간부 김모 씨가 지난해 대선 전후 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노무현 캠프에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중 상당 부분이 대선 이후 모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당시 당선 축하금 성격의 모금이 이뤄

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인 김씨는 “이 사건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사이고 이로 인하여 고도의 도덕성이 강조되는 금융기관의 감사팀장의 지위에 있는 자신의 명예가 치명적으로 훼손당하는 등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4카단 30911 채권가압류

채 권 자 : 김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 중 운

채 무 자 : 전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진 장

제3채무자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별지와 같음

### 1.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

#### (1) 기사내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주식회사 ○○은행의 감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채무자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의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위 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의 2003. 12. 22.자 제1면에 ‘노 대통령 고교후배 대선 후 수십억 거둬’라는 제목 아래 별지제1목록 기재 기사를, 같은 일자 제5면에 ‘대선때 못준 기업이 축하금 준 듯’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 제2목록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채권자에 대한 명예훼손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은행 간부 김모 씨가 지난해 대선 전후 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노무현 캠프에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음이 21일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이 중 상당 부분이 대선 이후 모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당시 당선 축하금 성격의 모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회 검사장)는 이에 따라 최근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몇 차례 소환을 통해 모금 경위 등을 집중추궁했다. 그러나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김씨가 수십억원대의 돈을 거둔 정황이 있어 조사중”이라면서 “대선 이전보다 선거 이후에 더 많은 돈이 모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0년대 후반 노대통령을 알게 된 뒤 가깝게 지내왔으며, 지난해 대선 때는 노후보의 지방 유세에까지 직접 따라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해 11월 문○○○○그룹 회장이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전달한 수표 1억원을 현금으로 바꿔졌음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후략(이상 제1면), 노무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진 ○○은행 간부 김모 씨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이부가 핵심구명 대상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김씨의 모금 규모는 수십억원대다. 김씨가 서울과 부산지역의 인맥을 활용해 기업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대선 때 미처 선거자금을 주지 못한 기업들이 자진해 돈을 건넸다는 정황을 잡고 이 부분을 검증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김씨가 한나라당에서 서정우 변호사가 했던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후략(이상 제5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살피건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대중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내용, 기사의 배치, 기사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사를 보면 채권자가 비록 부산상고 출신의 ○○은행 간부 김모 씨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적어도 채권자가 생활을 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기사에서 지칭하는 김모 씨가 채권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여기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사의 제목배치와 내용,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독자들로 하여금 채권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모금에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불법적으로 관여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으로 말미암아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 (1)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 사건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사이고 이로 인하여 고도의 도덕성이 강조되는 금융기관의 감사팀장의 지위에 있는 채권자의 명예가 치명적으로 훼손당하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3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단, 채권자는 그 중 일부인 2천만원만을 청구금액으로서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관계된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만을 위하여 게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최대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채무자의 행위는 위법성을 결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2)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주주의를 유지함에 필수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때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이러한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면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악의적인 가해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닌 한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가) 목적의 공공성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진 기사 내용은 대통령과 관계되어 있는 불법자금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기사화 하는 행위는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① 채권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은행의 간부라는 사실, ② 채권자가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지방 유세에까지 동행하였던 사실, ③ 채권자가 문○○이 이광재에게 전달한 1억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던 사실 및 ④ 채권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그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검찰이 2003. 12. 초순경에 채권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 (다) 채무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위 (나)항 기재 사실을 제외하고 채권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련된 기사 내용은 이 사건 기록만으로 그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나)항 기재 사실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있는 2인의 취재원으로부터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정부를 득한 후 그 수사 담당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던 사실 및 채무자가 다른 기자들과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에 대하여 취재하고 이를 게재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자신들의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재를 득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최소한 채무자에게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덧붙여, 채권자는 익명의 검찰관계자 및 청와대 관계자에게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답을 하여 준 사람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가능성 및 사실대로 대답을 하여 주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선자금을 모금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믿어야 할 필요성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더 그러하다).

(3) 따라서 채무자가 게재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이 사건 기사 게재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소결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〇〇〇〇-〇〇의 2필지 지상 〇〇〇〇〇〇아파트 제〇〇〇동 제〇층 제〇〇〇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는 그 시가가 약 5억원 정도이고, 그 지상에 채권최고액 1억 8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가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청구금액인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생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월급채권을 가압류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결정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1목록〉

“노 대통령 고교 후배 대선 후 수십억 거둬”

검찰, OO은행 간부 출국금지 조사

노캠프에 전달 의혹 본인은 부인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OO은행 간부 김모 씨가 지난해 대선 전후 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노무현 캠프에 전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음이 21일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이 중 상당부분이 대선 이후 모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당시 당선축하금 성격의 모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기사 5면>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회 검사장)는 이에 따라 최근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몇 차례 소환을 통해 모금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수십억원대의 돈을 거둔 정황이 있어 조사중이라며 “대선 이전보다 선거 이후에 더 많은 돈이 모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0년대 후반 노 대통령을 알게 된 뒤 가깝게 지내왔으며, 지난해 대선때는 노후보의 지방유세까지 직접 따라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해 11월 문OO(구속) OOO 그룹 회장이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전달한 수표 1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 줬음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불법 모금을 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노 대통령 전 후원회장 이기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강OO(구속) OOOO 회장이 그의 경기도 용인 땅을 산 것이 매매를 가장한 정치자금 제공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강씨에게 땅을 19억원에 매매계약했다가 계약이 파기된 뒤 2억원만 돌려준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 〈제2목록〉 내용생략

□

## 이 사건 서적을 계속 발행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입게 되는 명예훼손 등의 피해는 이미 입은 손해에 비추어 급박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3.자 결정 (2003카합3868)

###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이홍훈 판사)는 최원석 씨가 그의 전처인 배○○의 저서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잔」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 인바, 다수 일반인이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을 알고 있고, 이 사건 서적 내용 중 머리글자로 표시된 연예인의 실명을 두고 실제 연예인 몇 명이 거론되기도 하는 등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서적을 계속 발행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입게 되는 명예훼손 등의 피해는 이미 입은 손해에 비추어 급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안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3카합3868 판매등금지가처분

신 청 인 : 최 원 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강 담당변호사 이 지 은

피 신 청 인 : 1. 배 ○ ○

2. 조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회 영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취지 : 1.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서적을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서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단행본, 일간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광고지 등의 인쇄물을 각 편집, 발행, 판매하거나 또는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들은 이미 배포된 위 서적 중 아직 판매되지 않았거나 또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된 것을 전부 회수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들은 위 각 서적의 완제품 및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유 : 살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일부는 의도적으로 과장되거나 허위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서적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적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서적에 적시된 내용이 모두 사실일 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 등이 신청인 등 실제 인물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서적은 신청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거나 인식을 왜곡한 나머지 그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가사 이 사건 서적의 내용 전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적의 표현이나 구성에 나타난 신청인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인식, 실제로 이 사건 서적 발행 이후에 언론매체에는 이 사건 서적에 머리 글자로 표시된 연예인 등이 누구인지 여부가 부각되었고, 일반인의 관심도 이에 집중되었던 점, 이 사건 서적의 출판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전혀 없었던 점, 피신청인 배○○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내용, 이 사건 서적에 관한 보도자료,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피신청인들의 태도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공적 인물로도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은 신청인이 수인할 수 있는 사생활 공개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적 발행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이 허위인 경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상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가 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

고 보여지고, 신청인 등 실제 인물의 행동이나 성격이 작가인 피신청인 배○○ 내면의 예술적 창조 과정을 거쳐 승화되어 일반 독자가 작중 인물이 실제 인물과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인식하거나 새로 창조된 인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서적이 일응 자전소설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서적의 발행행위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서적의 발행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경우 피신청인들로서는 도리어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불 기회조차 없이 그 영업, 신용이나 명예를 위협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와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서적의 발행행위 등을 금지시킬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적은 이미 초판 24쇄가 인쇄되어, 적어도 그 발행부수가 수만 부에 이른 사실, 인터넷사이트나 신문 등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 서적의 발행 사실 및 주된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 다수의 일반인이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을 알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적의 내용 중 머리글자로 표시된 연예인의 실명을 두고 실제 연예인 몇 명이 거론되기도 하는 등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사실 등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서적을 계속 발행함으로써 인하여 추가적으로 입게 되는 명예훼손 등의 피해는 이미 입은 손해에 비추어 급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구하거나, 피신청인들이 추가로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제작 등을 시도한다면 사전에 별도로 그 영화 등의 제작금지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서적의 전면적인 판매금지 등을 명

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 흥 훈

판사 이 영 훈

판사 김 연 학

## 목 록

1. 가. 제호(題號) :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

나. 저자 : 배○○

다. 발행처 : 찬섬

라. 발행인 : 조○○

마. ISBN : 89-86039-69-9

바. 초판발행일 : 2003. 11. 25.

사. 발행금지 등을 구하는 부분 : 188 내지 231쪽. 끝.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 \*중재신청의 종류

#####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

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지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

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

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불복절차)** ① 반론보

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가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

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

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 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